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】

의안 번호	491
----------	-----

2024. 7. 18.
도시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7. 9 / 남양주시장
나. 회부일자 : 2024. 7. 10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7. 18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,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와 대중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
(안 제5조~제6조)
-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
(안 제7조~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

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,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,

-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사항 외에 ‘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’ 등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, 안 제8조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통카드 사용 시민과 대중교통운영자의 운송 손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자체 조례없이 상위법령에 따라 지원해왔던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마을버스 재정 지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1부.